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**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**

2023년 12 월 6 일

여 수 시 장 정기연 인

여수시 조례 제2002호

붙임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002호

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항제2호 중 “월 50만 원”을 “월 50만 원 이하, 연 100만 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) ②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.	**제27조(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)** ② ---------- ----------.
1. 해당 신고에 의하여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	1. (현행과 같음)
2.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인당 월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 이 경우 신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고한 것도 신고자가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.	**2.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인당 월 50만 원 이하, 연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 이 경우 신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고한 것도 신고자가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.**
3. (생 략)	3. (생 략)